

제270회 임시회  
2008. 5. 15.(목)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

의회운영위원회  
전문위원회

# 검 토 보 고 서

## -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-

### 1. 추진개요

가. 근 거 : 충청북도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

나. 추진경과

- 의원 연구활동 활성화 방안 검토보고 : '08. 1. 25
- 의원 연구활동 지원 세부추진계획 : '08. 1. 31
- 운영위 「의원 연구활동 지원사업」 설명 : '08. 3. 3
- 전체의원 「의원 연구활동 등록 안내문」 발송 : '08. 4. 3
-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 및 활동계획서 접수 : '08. 4. 1~4 30

다. 신 청 자 :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의원 (개인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여성결혼 이민자, 외국인 산업연수생, 이주 노동자와 새터민의 지속적인 유입 등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라
-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능력 및 학습부진들의 사유로 집단 따돌림 등 “새로운 교육 소외계층”으로 대두
-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문제점과 충북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문제 해결방안 모색으로 정책개발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- 연구과제명 :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문제와 해결방안
- 구성의원 : 권광택의원 단독연구
- 연구배경 :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른 자녀교육 문제점 대두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필요
- 연구일정 : 2008. 9. 1 ~ 10. 31 (2개월)
- 연구활동비 : 1,500천원(보조 1,000천원, 자부담 500천원)
- 연구방법
  -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 조사 : 도내 다문화 가정 현황
  - 관련자 면접조사 및 보고서 작성 : 관련사례 조사 및 올바른 방안 모색, 보고서 작성

## 다. 검토의견

- 결혼이민자 가정 급증으로 새로운 “교육 소외계층”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
- 도내 전수조사 및 분석을 통한 「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문제와 해결」의 합리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함
- 따라서 본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필요한 연구활동비를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- 다만, 의회는 입법기관이므로 집행부의 정책개발과는 차별화 하여 개발한 대안이 입법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

### 3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법 제38조(지방의회의 의무)

-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

나.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충청북도 의회의원(의원연구단체를 포함한다)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이 규칙에서 연구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 또는 의원 연구단체(이하 "연구단체"라 한다)라 함은 의회발전 및 도정시책의 연구, 개발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처에 등록된 의원을 말한다.

②의원연구단체는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만이 아닌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의회사무처에 등록된 연구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등록) ①의원 및 연구단체가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의원 및 연구단체는 1년에 2개 이상의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등록을 할 수 없다.

③의원 또는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계획서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결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(심의위원회) ①의원 및 연구단체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되 심의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.

②심의위원회 운영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.

③의원 및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무는 총무담당관이 보좌한다.

제5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
1. 연구의원 및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
2. 연구활동계획의 심의 및 과업부여
3. 연구결과보고서 심의 및 연구활동비의 지급여부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회의)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당해연도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보고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 (개정 2004. 9. 24)

②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 및 연구단체대표를 참석토록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.

③심의위원회 위원은 자기의 연구계획 또는 연구결과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 다만 위원회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7조(연구활동 기간) 의원 또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연구계획 승인의결을 의장이 통보한 날부터 당해연도 11월 말까지로 한다.

제8조(연구활동비 지원) ①의장은 의원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중 일부를 한도액을 정하여 연구활동비에 지원할 수 있다.

②연구활동비 지원 한도액은 의원 개인의 경우 100만원 이하, 연구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당 300만원 이하로 한다.

③심의위원회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중 연구활동비 전체 한도액

범위내에서 연구단체의 등록, 연구주제, 연구활동비 및 심의위원회 의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의원 및 연구단체에 통지한다.

제9조(연구활동비의 지급기준등) ①의원 또는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연구 활동비는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, 수용비, 공공요금, 용역비, 임차료, 급량비, 여비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제8조의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다.

②연구활동비는 심의위원회의 연구계획승인 심의의결 통보를 한 때에 연구활동비 지원 총액의 50%범위내에서 지급하고, 잔액은 연구활동 보고서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승인심사 결과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.

③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 및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 의 활동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.

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시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 를 회수하거나 조정 지급할 수 있다.

1.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
2.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
3. 연구활동보고서가 연구활동계획서의 내용에 현저히 미달한 때
4.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

제10조(연구계획의 변경등) ①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 또는 연구단체 는 심의위원회의 심사, 의결을 거친 연구계획서의 연구주제 및 중요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②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 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 하여야 한다.

③의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를 해당의원 및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) ①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 및 연구단체는 12월10일까지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각 15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04. 9. 24)

②제1항의 연구활동비 정산서에는 별표 1의 연구활동비 정산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세부사항) 이 규칙 이외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